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림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청년층 산림분야 신규진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청년층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완화(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)

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층의 산림산업분야 진출 진입장벽을 해소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 : 2025.11.21.~12.31.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라목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”을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)	제12조(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)
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	① ----- ----- -----.
1. 산림용 종묘생산업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	1. ----- ----- -
가.~다. (생략)	가.~다. (현행과 같음)
라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	라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----- ----- -----
마. (생략)	마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산림자원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185